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09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인적공제 기본공제금액 상향	3

I. 개요

1. 조은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6909호)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조은회의원 등 12인
- (2) 발 의 일 : 2026. 2. 20.
- (3) 회 부 일 : 2026. 2.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적공제의 핵심 제도인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2009년 이후 17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동결상태임.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물가와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로 근로자와 서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실질 부담은 크게 가중되고 있음에도, 기본공제액은 이러한 현실적인 경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물가상승에 따라 명목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실질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제액이 고정됨으로써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지속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 근로자의 체감 조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등 기본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 채 방치될 경우 민생 경제 전반의 부

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연 150만 원에서 연 25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물가 상승과 생계비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인적공제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내수 소비 여력을 제고하는 한편, 가구원 수가 많은 가계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인적공제의 특성을 활용하여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인적공제 기본공제금액 상향(조은회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기본공제(제50조) ○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수 × 연 150만원 - 해당 거주자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 기본공제액 상향 등 ○ (현행과 같음)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수 × 연 250만원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7. 1. 1.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조은회의원안 2026. 2. 20. 제출(의안번호 16909)

☐ 기본공제 등 인적공제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를 둌으로써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과세 실현을 취지로 하는 제도임.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포함)인 배우자·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1인당 연 150

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 개정안은 물가 상승, 저출생 문제 심화, 경기침체기 근로소득자 가처분소득 증가 필요성 등에 따라 현재 인당 연 150만원으로 책정된 인적공제 기본공제금액을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최근 10년간 소득세 수입액을 살펴보면, 2016년 68.5조원에서 2022년 128.7조원까지 소득세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크게 감소(△14.7조원, △45.5%)하면서 전년 대비 12.9조원 감소한 115.8조원을 기록하였음. 이후 소득세 수입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25년에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2024년 대비 13.0조원(11.1%) 증가한 130.5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전체 국세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8.2%에서 2025년 34.9%로 확대되었음.¹⁾

□ 종합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은 2008년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9년에 50만원 상향된 150만원으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그런데 2009년 대비 2025년까지의 누적 물가상승률이 40.0%임에도

1) 「2026 대한민국 조세」, 국회예산정책처

불구하고 1인당 기본공제액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 (150만원)을 유지하고 있음. 이처럼 장기간 기본공제금액이 변동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4년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83.9	89.9	93.0	94.9	97.6	99.5	102.5	114.2	116.6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100 기준

특히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아지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자산가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나 임금 생활자의 경우 이러한 물가상승효과가 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아 자산 보유자와 임금 생활자 간의 실질적인 소득 격차가 더욱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을 증액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경감되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세수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4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중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2,101만 3,304명으로, 그 금액은 48조 6,615억원에 달하며, 종합소득

신고자 중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1,191만 4,202명이며 그 금액은 26조 3,248억원에 달하는 상황임. 개정안과 같이 인적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대규모의 세수감소가 수반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기준 종합소득·근로소득 관련 기본공제 적용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인 원	금 액
종합소득	11,914,202	26,324,781
근로소득	21,013,304	48,661,464

자료: 국세통계연보(3-1-3), 국세통계연보(4-2-1), 국세통계포털(TASIS)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기본공제금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2027년 8조 900억원, 2031년 5조 5,566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0조 1,401억원(연평균 6조 280억원)으로 예상됨.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기본공제 확대 (안 제50조제1항)	△80,900	△58,481	△52,471	△53,982	△55,566	△301,401	△60,2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따라서 이처럼 기본공제금액의 증액 필요성과 그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기본공제금액을

일시에 100만원 인상하는 것 외에 그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7